발 간 등 록 번 호
72-6530000-100068-10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2025

강원특별자치도

#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GANGWON STATE

# 2025
# 강원특별자치도
#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2025

# 강원특별자치도
# 규제혁신
# 우수사례집

GANGWON STATE

강원특별자치도

# Contents


Chapter I.

## 규제혁신 우수사례

도 본청 군사규제, 어렵지만 두드리자, 그러면 열리리라 ..... 10

도 본청 산업단지 좌회전 불허, 그림자 규제 해소로 기업활력 제고 ..... 14

강릉시 10종의 계약서류를 1종으로 완화하여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 경감 ..... 19

강릉시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거주 주민의 안전 확보 ..... 23

강릉시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건설사(대형, 지역) 참여기회 확대 ..... 26

태백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사업 ..... 30

영월군 전통시장 노점 등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 ..... 35

화천군 정책사업 연계로 법적제도의 한계를 해소한 유해축사 정비 ..... 39

화천군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연계 청년농촌 공공임대 주택 조성 ..... 42

Chapter II.

## 기업규제 해소 우수사례

도 본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제도 개선 ..... 48

도 본청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 52

Chapter Ⅲ.

##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 본청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완화 제도개선 ····· 58

도 본청 농지특례 현실화! 농촌활력지구 '1만평 규제' 없앴다 ····· 62

원주시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 65

강릉시 화장장 사용료 관내·관외 기준 개선 ····· 67

동해군 자치법규 개정으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69

양양군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추진 ····· 72


Chapter Ⅳ.

## 자치법규 정비 사례


도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76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 관련규정 정비

도 본청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79
-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 및 세분화


새로운 강원! 특별 자치시대!

GANGWON STATE

# Ⅰ. 규제혁신 우수사례


| | | |
|---|---|---|
| 도 본청 | 군사규제, 어렵지만 두드리자, 그러면 열리리라 | 10 |
| 도 본청 | 산업단지 좌회전 불허, 그림자 규제 해소로 기업활력 제고 | 14 |
| 강릉시 | 10종의 계약서류를 1종으로 완화하여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 경감 | 19 |
| 강릉시 |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거주 주민의 안전 확보 | 23 |
| 강릉시 |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건설사(대형, 지역) 참여기회 확대 | 26 |
| 태백시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사업 | 30 |
| 영월군 | 전통시장 노점 등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 | 35 |
| 화천군 | 정책사업 연계로 법적제도의 한계를 해소한 유해축사 정비 | 39 |
| 화천군 |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연계 청년농촌 공공임대 주택 조성 | 42 |

# 01

# 군사규제,
# 어렵지만 두드리자,
# 그러면 열리리라!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과 ☎ 033-249-3941

## 개선 전

도내 접경지역은 군사규제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나, 軍에서는 규제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

## 개선 후

사단, 군단 등 군의 반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지작사령관의 현장 점검 이끌어 내
민통선 북상에 따른 12.4㎢ 규모 군사규제 개선
주민 출입불편 해소, 재산권 보장 등 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국방개혁에 따른 전방 사단 통·폐합과 군 장병 수 감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철원군은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출입이 제한되어 영농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내 땅인데도 닭장 하나, 개장 하나도 못 짓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음
- 화천군은 접경지역만이 가진 자원인 백암산 전망대와 백암산 로프웨이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함
  - 그러나 관광객 유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상령 ~ 안동철교 ~ 평화의 댐' 동축 구간이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이 구간을 이용하려면 수상령에서는 7사단 초병의 통제를, 평화의 댐 방향에서는 21사단 초병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부대별로 통제방식이 달라 관광객과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특히 군 경계근무 강화 시 출입이 전면 통제되기도 함

## 규제개선 과정

- 관할 부대인 7사단, 21사단을 방문해 규제완화를 협조 요청했으나, **'GOP와 가까워 고도의 경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강력히 반대
- 반대하는 두 사단을 설득하기 위해 상급부대와 협의하려 했으나, 7사단은 2군단, 21사단은 3군단 관할로 협의가 쉽지 않았음
- 1군사령관(대장 박○○)을 방문해 화천 동축 구간 규제완화를 건의했으나, 사단과 같은 이유로 반대
- 이후 1·3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되고 초대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김○○)이 부임하게 되어 직접 방문해 현장 확인을 요청

- 현장을 확인한 지작사령관은 '군사보호구역을 완화하겠다'고 긍정적 답변
  - '수상령 초소(7사단)는 안동포대 쪽으로, 평화소초(21사단)는 북진로 쪽으로 옮겨서 수상령 ~ 안동철교 ~ 평화의 댐 구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
- '현장을 한 곳만 더 가셔 달라'며 철원 신벌지구가 군사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영농을위한 출입이 불편하고, 영농 시설물도 못 짓고 있으니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
  - **'민통선을 북상 조정해서라도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약속
- 사단, 국방부 등 군보심의 거쳐 철원·화천 민통선 북상(12.4㎢) 국방부 발표('25.3.26.)
  - 철원 고석정 관광지 및 먹거리지원센터는 군부대 개별협의로 행위제한 완화

## 개선내용

-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철원·화천 5개 리 12,433,716㎡

| 시군 | 소재지 | 개선 요구 | 면적(㎡) | 개선 효과 |
|---|---|---|---|---|
| 철원 | **신벌지구** (와수리, 운장리, 사곡리) | 통제보호 → 제한보호 | 2,395,500 | • 영농, 취락지로 출입 불편 해소 및 주민 재산권 보장(건축 행위 가능) |
| 화천 | **안동철교~평화의 댐** (풍산리, 동촌리) | | 10,038,216 | • **평화의 댐 구간 최초 동서 개통(9.9㎞)**<br>• 자전거길, 케이블카 등 **DMZ 관광활성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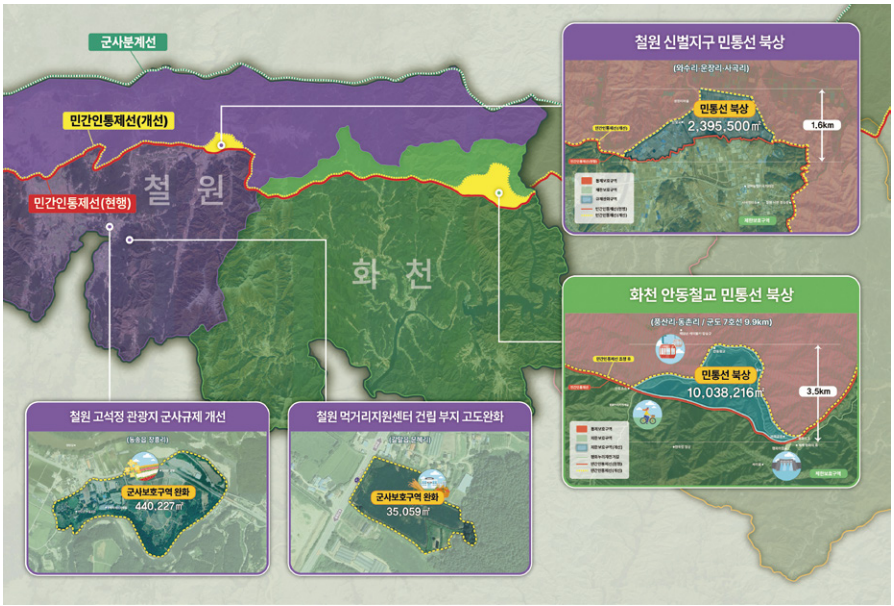
- 제한 완화: 철원 2개 리 475,286㎡

| 구분 | 소재지 | 개선 요구 | 면적(㎡) | 개선 효과 |
|---|---|---|---|---|
| 철원 | **고석정 관광지** (동송읍 장흥리) | 제한보호 → 협의위탁 | 440,227 | • 건축행위 제한 완화 → 지역 관광 개발 확대 |
| | **먹거리센터** (갈말읍 문혜리) | 제한보호 → 조건부 동의 | 35,059 | • 고도제한 완화로 센터 건립 추진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2010년 이후 철원군과 화천군 일대 민통선이 각각 1.6㎞와 3.5㎞ 북상 조정
  -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장 및 지역개발 기반 마련

- 강원연구원('25. 4. 9.) 추산에 따르면,
  민통선 북상으로 인한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000억 원
  - 규제피해비용 감소(249.8억) + 관광수입 증가(1,750.4억)
- 철원군 고석정 관광단지는 군부대 승인 없이 지자체 승인으로 개발 가능
  - 연간 누적 관광객이 200만 명을 돌파하여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음







화천 안동철교 민통선 북상




철원 신벌지구 민통선 북상

# 02

# 산업단지 좌회전 불허, 그림자 규제 해소로 기업활력 제고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 033-249-3709

## 개선 전

문막외국인투자지역 기업 정문 앞 도로
황색실선 중앙선 설치 및 안전지대 설치에 따른 차량사고 위험

## 개선 후

출입구 앞 도로 이중실선중앙선 절선을 통한 좌회전 허용
안전지대 폐쇄 후 노상주차장 설치

## 현황 및 문제점

- 문막산업단지, 조성 당시 수립된「교통계획」에 따라 도로교통체계 운영 중
  - 문막·반계 일반산단 + 농공단지 총 132만㎡가 1987~2013년 사이 조성
  - 107개 업체, 5,045명 고용된 대규모 산업단지로 성장하면서 교통량 급증
- 산업단지 내 도로 일방통행 + 좌회전금지 구간 과다, 효율성 낮음
  - 황색 이중 실선으로 도색되어 좌회전 절대 금지 구조: 중앙선 및 안전지대
  - 산업단지 내 도로 일방향 통행계획 수립 및 광범위한 좌회전 금지 구간 설정
- 불합리한 도로교통 체계 방치, 대형 물류차량 불법 좌회전 빈발
  - 기사들은 빠른 공장 진·출입 선호하지만, 정상 경로 이용 시 우회거리 과다
  - 특히 회전교차로 신설(2019) 이후, 회전 반경 및 하중 문제로 기피 현상 증가

  ※ 교차로 협소하여 회전반경 큰 대형화물차량 진· 출입 시, 차량 및 시설물 손상 우려
- 공장 입구 도로변 및 중앙 안전지대, 대형 물류차량 상습 무단 주·정차
  - 산업단지 내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및 단속 인력 부족이 원인
  - 시야 확보가 어려워 진·출입 시 접촉 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



황색 이중실선 도색현황



도로 양측 또는 안전지대 불법 주정차현황

- 문막 산단 입주기업, 중앙선 절선 지속 건의에도 계속 부결('14.~'24.)
  - ① 공장 착공 신고 시 ② 입주 후 대형물류차량 자재 반입·반출 애로 시
  - 입주기업 절선 요청 → 원주시 안건 제출 → 원주경찰서 심의 부결 반복

- 특히 원주시장('24. 1.) 현장 방문 및 코트라 주관 문막외국인투자단지 입주기업 간담회('24. 8.)를 통해 공식 건의된 안건까지도 공공성을 이유로 부결('24. 12.)

## 규제개선 과정

- 행정기관(道·市)의 적극적인 지원과 결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 ('25. 3.) 문막 외투단지 외투기업 2개 업체 유치 → 전량 입주 완료
  - ('25. 4.) 업무협약 준비과정에서 도지사 주재 '입주기업 간담회' 병행 구상

  ※ 중앙선 절선 등 문막 외투단지 입주기업 애로사항 5건 사전 접수

- 문막외투단지 방문,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시 적극적인 해결의지 표명('25. 5. 22.)
  - **도지사: 필요성 공감,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챙겨보겠음**
  - **원주시장: 진·출입로마다 절선 필요. 빙 돌면 물류비 더 들고 위험**

  ※ 강원특별자치도 · 원주시 · 한국산업단지공단 · 입주기업(해태가루비 등 6개 기업) 대표자 참석

- 도(道) 산업국장,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 예방('25. 5. 26.)
  - 외투단지 입주기업 중앙선 절선 민원 전달 및 투자환경 개선 논의
  - **자치경찰위원장: 현장조사 후 원주경찰서와 함께 해결방안 마련 지시**

  ※ 외투단지 입주기업 진·출입 차량 교통안전 확보 건의서 전달(도 → 자치경찰위)

- 도 자치경찰위원회 긴급 현장 점검 및 조치계획 수립('25. 5. 26.)
  - 자치경찰위: 일반도로 아닌 단지 내 입주기업 차량 전용도로 특성감안 필요, 당초 9월 예정 교통안전심의위원회 6월말 조속 개최 및 해결 지시
  - 원주경찰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주기업 전체 의견 필요
  - 원 주 시 청: 입주기업 전체 의견 취합 및 심의통과 시 차선 도색 조속 조치하겠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간담회('25. 6. 12.):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본부 주관
  - 반계일반산단 입주기업 전체 의견 수렴 결과 12개 업체 중앙선 절선 요청

  ※ 간담회 직후 산단공, 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시, 원주경찰서 합동 현장조사도 병행

- 2025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 심의 제출('25. 6. 16.): 원주시
  - 제출안건: 외투기업 등 5개소, 중앙선 절선 및 안전지대 제거(시청 → 경찰서)

  ※ 촉박한 심의일정 감안, 사전조사 필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추가 심의 예정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통과('25. 6. 24.): 5개소(외투기업 3, 일반 2)
  - 노상주차장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중앙선 절선 등 조건부 원안 가결

- 노면 표시 등 연내 도로 도색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 추진 중: 원주시
  - ('25. 7.) 도로 도색 실시설계 선 발주 및 사업비 반영 요구: 1억 원
  - ('25. 9.) 추경 4천만원 및 '26. 당초 7천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 편성 결론

- 단지 내 도로 구획 전면 재조정 및 진입차량 좌회전 가능 조치: 원주시
  - ('25. 10.) 원주경찰서 1차 심의 통과된 5개소 우선 도색
  - ('25. 상반기) 원주경찰서 2차 심의 통과 예정 7개소 추가 도색

  ※ 단지 내 차선 도색, 중앙 안전지대 폐쇄,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 병행 추진(원주시)

- 2025년 2차 교통안전심의회 심의 상정 예정('25. 12.): 원주경찰서
  - 제출안건: 추가 9개소에 대한 중앙선 절선 및 안전지대 제거

## 개선내용

- 산업단지 물류차량 진·출입로(공장 입구) '중앙선' 절선 허용
  - 그간 개별기업 민원으로 대응, 공공성 부족을 사유로 기업애로 가중
  -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단지 내 모든 기업의 공통 문제로 인식,

  ※ 입주기업, 진·출입 차량 교통사고 시 법규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지속 호소

- 산업단지 내 불합리한 도로교통 체계 획기적 개선
  - 일방향 통행·좌회전 금지 → 다방향 통행·좌회전 허용: 빠른 진·출입 가능
  - '안전지대' 삭제, '횡단보도' 축소 → '노상주차장' 설치로 상습 주정차 해소

  **⇒ 교통법규 준수하며 물류차량 좌회전 가능하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그림자 규제 해소를 통한 문막 산업단지 내 교통안전 개선
  - 반복 부결된 중앙선 절선 민원, 일괄 해결로 입주기업 만족도 제고
  - 공장 입구 좌회전 허용을 통한 교통사고 위험 저감 및 운행 안정성 확보
  - 중앙 안전지대 폐쇄로 시야 확보, 입주기업 진·출입 차량 사각지대 해소
- 산업단지 내 물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 경영 부담 경감
  - 진·출입 동선 개선, 운송시간 단축 및 유류비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노상주차장 및 주정차금지구역 신설로 대형화화물차량 상습 주정차 해소
  - 불법 주정차 방지, 물류 흐름 원활화, 사고 책임 부담 완화, 법적 리스크 저감
- 협업 기반의 규제혁신과제 추진 및 우수사례 확산 기반 마련
  - 지자체-자치경찰-산단공 간 협력 통한 협업 모델 정립
  - 개발 기업 민원에서 산업단지 전체의 도로교통체계 사안으로 발상 전환
  - 전국 산업단지에서 유사 민원 제기 → 확산 가능 우수사례 창출

※ 단지 조성 시 수립된「교통계획」, 운행차량 증가 등 현실 여건 반영 미흡




도로 중앙선 절선 구간

# 03

# 10종의 계약서류를 1종으로 완화하여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 경감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계과 ☎ 033-640-5079

## 개선 전

계약 시 10여종의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이 어렵고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 증대

## 개선 후

10종의 계약서류를 1종(계약통합이행서약서)으로
계약 제출서류 경감

##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과 계약체결 시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계약업체는 서류를 준비하고 발급받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행정기관은 서류 누락 및 오류로 인한 반복적인 보완 요청으로 계약 절차 지연 발생
- 제출된 종이서류의 검토·보관·폐기 과정에서 행정 비효율성 증가
- 불필요한 종이문서 생산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

## 규제개선 과정

| | |
|---|---|
| ’24. 12. | 계약에 필요한 기존의 제출 서류 중 중복되는 항목 정리 |
| ’24. 12. | 계약이행에 필수적인 내용을<br>하나의 서약서로 통합할 수 있도록 검토 |
| ’25. 1. | 표준 서식 초안 작성 후 관련 부서(감사관) 의견 수렴 |
| ’25. 2. | 계약이행통합서약서 본격 도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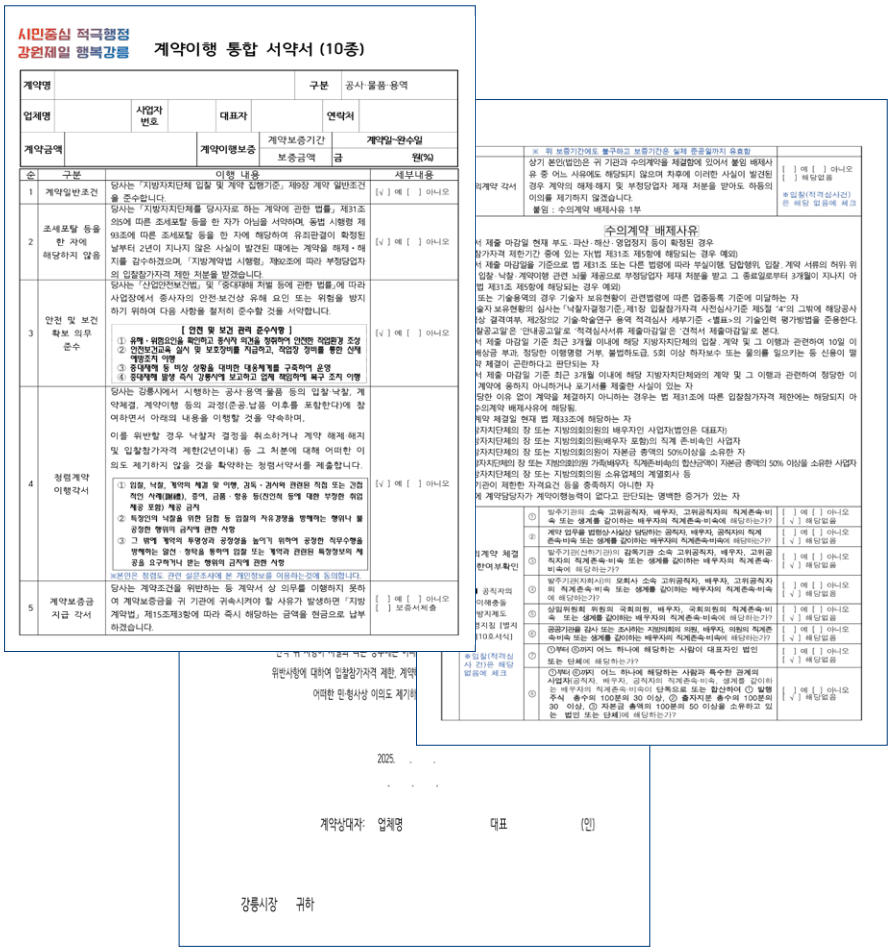
## 개선내용

- 기존 10종의 계약관련 제출 문서(청렴이행각서, 수의계약 각서 등)를
  1종의 계약이행통합서약서로 통합
- 계약에 필요한 법적 구속력 및 확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업체의 입장에서 단일 문서만
  제출하면 모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 제출 문서 수 감소로 업체의 행정비용 및 시간 부담 감소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계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유지하면서 행정절차 간소화
- 계약업체의 행정적 부담 경감 및 계약 처리 속도 향상
- 6만장 이상의 종이문서 절감 효과(2024년 수의계약건 기준)

##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서식



시민중심 적극행정
강원제일 행복강릉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0종)

| 계약명 | | 구분 | 공사·물품·용역 |
|---|---|---|---|
| 업체명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 계약금액 | 계약이행보증 | 계약보증기간 / 보증금액 | 계약일~완수일 / 금 원(%)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 1 | 계약일반조건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br>【 안전 및 보건 관련 준수사항 】<br>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국가등 참여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br>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해 예방조치 이행<br>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br>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강릉시에 보고하고 업체 해임하여 복구 조치 이행 | [√ ] 예 [ ] 아니오 |
| 4 | 청렴계약 이행각서 | 당사는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br>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br>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검독·검사에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폐해를), 증거, 금품·향응 등(견건적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br>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업질의 저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br>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체 행위 없을 것이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br>보본인은 청렴도 관련 설문조사에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것에 동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5 |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br>[ ] 보증서제출 |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강릉시장 귀하

※ 위 보증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수의계약 배제사유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2025년 02월 06일 (목)
G1방송
강원

## 강릉시,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 서류 간소화

김기태 기자 [ purekitae@g1tv.co.kr ]



…, 계약통합 이행각서 도입 서류 간소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서류 간소화를 추진합니다.

…약통합 이행각서'를 도입해 기존 계약 행정에 필요했던 계약이행 보…각서 등 10개 서류를 통합이행각서 1개의 서류로 통합합니다.

…약 담당자의 행정 부담과 계약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02월 06일 (목)
연합뉴스
사회

## '계약 서류, 한 장이면 끝'…강릉시,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

계약서류 10종 → 1종으로 대폭 간소화…관행적 계약업무 정비




강릉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강릉시는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를 돕고자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기존 10종의 서류를 1종으로 간소화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계약 과정에서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이행보증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으로 단 1종의 서류만 제출하면…개선했다.

이를 통해 계약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계…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계약 상대자의…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서식 내에 수의계약 시 지역 내…사용하도록 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지…으로 기대한다.

2025년 02월 07일 (금)
江原日報
지역 18면

## 강릉시 "번잡한 계약 서류, 단 한 장으로 해결"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
**기존 10종→1종 간소화**

【강릉】강릉시가 계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 상대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이행보증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 등 10종의 관련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통해 단 1종의 서류만 제출하면 모든 내용을 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과 계약 상대자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시작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계약업무 시스템을 정비하고 앞으로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해 계약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익기기자 igjung@

2025년 02월 07일 (금)
강원도민일보
지역 12면

## 강릉시 계약서류 '10여종→1종' 간소화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
**사업자 부담 완화 규제개혁**
**서류 6만장 이상 절감 기대**

강릉시가 사업자들이 시와 수의계약 등 각종 계약을 할 경우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계약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 기존 10여종의 계약서류를 1종으로 대폭 줄여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6일 밝혔다.

계약통합이행각서는 기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이행보증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등 10여종의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던 것을 하나의 양식에 담아 서류를 최소화 시켰다.

이에 따라 계약자는 수의계약 및 입찰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에서 마련한 계약통합이행각서 한장만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또 계약통합이행각서 서식 내에 수의계약 시 지역 내 생산 자재 및 장비,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항목도 추가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는 그동안 형식적이거나 불필요한 서류로 인해 사업자들이 각종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로 기존 업무에 비해 서류준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꼽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수의 계약 건수가 8041건에 달해 서류장수만 8만장이 넘어 이번 서류간소화로 6만장 이상의 서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계약통합이행각서 도입을 시작으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계약업무 시스템을 실용적으로 정비하고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한 계약절차도 운영, 효율을 극대화 할 방침이다.

정윤식 시 회계과장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계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 계약통합이행각서를 도입했다"며 "서류 간소화로 사업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백 sbhong@kado.net

# 04

# 해안변 녹지축 공원화 조성 사업으로 무허가 건축물 거주 주민의 안전 확보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녹지과 ☎ 033-640-5905

## 개선 전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취약지역인 해안변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 대두

## 개선 후

토지 30필지 보상, 지장물(건축물) 53동 보상 및 철거,
53가구 약 200여명 주민 이주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따라 너울성 파도로 연안침식 피해가 심했던 사근진, 순긋해변 일원 불법 건축물 거주 주민, 안전대책 및 건축물 정비 필요
- 해안변 송림지역 내 난개발 방지 및 자연경관, 해안녹지 보전 필요성 대두

## 규제개선 과정

| | |
|---|---|
| ’21. 2. 10. | 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 ’22. 12. 20 | 경포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
| ’22. 12. | 거주 주민 반발로 인한 갈등 증폭 |
| ’23. 1. 3. | 보상계획 공고 |
| ’23. 4. 27. | 보상협의회 개최 |
| ’23. 6. | 보상 극적 타협 |
| ’23. 7. ~ ’24. 3. | 주민이주 및 무허가 건축물 철거 |
| ’24. 3. ~ ’26. 12. | 건축물 철거지역 경관녹지 조성 |

## 개선내용

- 재해취약지역인 해안변 불법 건축물 거주 주민의 이주로 안전 확보(53가구 약 200여명)
-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20필지) 및 건축물(53동) 보상 후 철거
- 보상 완료 지역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관녹지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 조성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토지이용규제 해소 등 사유재산권행사 제한에 대한 **오랜 숙원 해결**
- 해안변 무허가 건축물을 철거하여 40여년 넘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해안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사업시행전(2022. 7.)



사업시행전(202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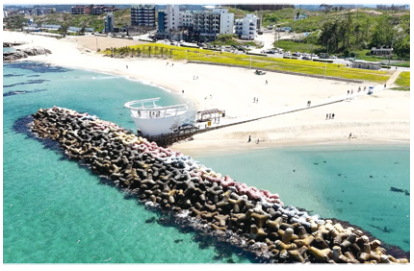
지장물철거 후 경관복원



안전성확보를 위한 축조블럭 설치



무허가 건축물 철거후 전경(2024)



부지활용을 통한 관광활성화(2024~2025)

05

#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건설사 참여기회 확대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ITS추진과 ☎ 033-640-5652

## 개선 전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신축공사의 기술형 입찰에서
입찰 참여조건이 과도하여 건설사의 참여기회 제한

## 개선 후

입찰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등
기술형 입찰 유찰 방지 노력으로 건설사 참여 기회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기술형 입찰에서 참여희망 건설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의 기회가 부족하여 1차 유찰률이 90% 이상을 상회할 정도로 관련업체의 참여기회 부족
-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신축공사」에서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에 따른 과도한 입찰 참여 조건으로 건설사의 참여율 저조**
  -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정(기본설계 기간 150일 필요)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656호)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공사기간 37개월 필요)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및 '조달청 시설자재가격(나라장터) 자료'를 참고하여 검토한 **공사비가 급격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유찰 발생)**

    **→ 전국적으로 기술형 입찰 1차 공고 기준 유찰률 90% 이상으로 입찰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통한 건설사 참여 기회 확대 노력 필요**

## 규제개선 과정

- 시설공사 입찰안내서 사전공개: '24. 3. 8. ~ 3. 25.
- 강릉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입찰 참여 기준 완화(참여 확대) 의결: '24. 3. 14.
-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책: '24. 3. 21.
- 계약방법 사전검토서 접수 시설공사 신속한 발주 대응책: '24. 4. 12.
- 시설공사 입찰안내서 심의(조달청) 입찰 참여 기준 완화 최종 의결: '24. 4. 16.
- 시설공사 입찰 공고: '24. 5. 1.
- 시설공사 현장설명회 개최 참여 건설사 의견 수렴: '24. 6. 3.
- 입찰안내서 질의·답변 참여 건설사 의견 반영: '24. 6. 18.

- 공개설명회 / 공동설명회 및 기술검토회 경쟁입찰 성립: '24. 9. 3. / 9. 12.
- 기본설계서 평가회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4. 9. 26. / 10. 8.
- 시설공사 우선시공분 계약 실시설계 병행 추진으로 공기단축: '24. 11. 13.
- 시설공사 실시설계 도서 제출 및 평가회 개최: '25. 2. 25. / 3. 20.
- 시설공사(총공사) 계약 체결 국제행사 필수시설 적기 확충: '25. 4. 10.

## 개선내용

- 입찰 관련 사전공개, 공개설명회 및 현장설명회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한 입찰 참여 조건과 입찰안내서를 강릉시와 조달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완화함
  - 기본설계 기간 60일 단축: 150일 → 90일
  - 공사기간 17개월 단축: 37개월 → 20개월
  - 시공능력평가액 130% 하향 조정: 200% → 70%
  - 동일공사실적 30% 하향 조정: 100% → 70%
  - 지역의무도급비율 19% 하향 조정: 최대 49% → 30%
  - 물가변동분 반영한 단위면적(㎡)당 공사비 기준 상향: 2022년 → 2024년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및 인허가 진행사항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
- 기본설계 기간 단축 및 패스트트랙(Fast Track) 적용으로 공사기간 단축

  → 입찰 관련 발주처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규제 완화를 위한 심의에 적극 대응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건설사 중 2개 컨소시엄이 입찰에 참여함

  → 특히, 유찰 없는 경쟁입찰 성립과 사업 이해도가 높은 건설사 참여 및 선정으로 국제행사인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필수시설인 '대회의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입찰 참여 조건 완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건설사 참여기회 확대




사전 공개설명회 개최(2024. 3. 21.)




현장설명회 개최(2024. 6. 3.)

## 기술형 입찰 대어 2건 발주 대기...유찰 없이 GO?

기사입력 2024-03-29 08:00:35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사·조달청 적극행정...건설사 '관심'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 관측...유찰 가능성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대형 기술형입찰 2건이 이르면 4월 말부터 연이어 발주될 전망이다.

그간 공사비 과소 책정 탓에 1차 공고에서 90%가 유찰된 것과는 달리 이번에 1건은 유찰 없이 낙찰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추정금액 926억원인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와 2107억원 규모인 기본설계 기술제안 방식의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에 대한 입찰안내서 사전 공개를 마쳐 이르면 5월 초 발주될 예정이다.

연초부터 유찰 사태 위기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턴키 방식인 400억원 규모의 '남산 곤돌라 설치공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오랜만에 경쟁 구도가 성립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원가 부족을 이유로 유찰이 유력했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에 건설사들이 참여 의향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강릉시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조달청 차원의 사전 설명회가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 '유찰 대란'속 단번에 주인 찾은 턴키...비결은 '사전 설명회'

기사입력 2024-09-30 05:00:13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올해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60%에 육박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찰이 유력했던 지방 자치단체의 건축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사업이 단 한 번의 유찰도 없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며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릉시 수요, 조달청이 입찰 행정을 주관한 턴키 방식의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공사'가 공고 4개월 만에 유찰 없이 경쟁구도를 형성해, 지난 26일 설계심의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최근 기술형 입찰 사업의 1차 공고에서 유찰률이 90%를 넘어선 시점인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 사업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참여를 검토했던 건설사들은 조달청이 도입한 '사전 설명회'와 강릉시의 적극 행정이 보탬 했던 덕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서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2차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체'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에 한정해 사전 설명회를 도입했으로써, 공고 전 건설업계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말 조달청과 강릉시는 현장 인근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10여곳이 참여한 가운데 사전설명회를 통해 지반보고서 및 인허가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어 업계의 공사규모 축소 및 지역업체 참여비율 축소 등 6가지 건의사항을 접수해 입찰서에 반영하여 1차 공고부터 유찰 없이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사업을 수주한 HJ중공업은 "2026년 10월 개최되는 '강릉 ITS 세계총회'을 위해 추진하는 공사이다 보니 공기가 민감해 입찰 행정 단축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을 조달청이 잘 조율해줬고, 강릉시가 적극 행정으로 건설사의 의견을 수렴했다"라며, "최근의 기술형 입찰 유찰로 국책사업이 대부분 중단된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사례가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공사비 부족이 유찰의 근본 원인이지만, 정부 재정은 한정된 만큼 사업 리스크 축소 등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다른 정책적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조달청의 사전설명회를 국책사업에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앱을 간편가기 '내손안에' 대한경제

06

# 태백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사업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 033-550-2402

## 개선 전

태백시 내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가능한
소아과의 부재

## 개선 후

관내 병원과 협의 실시 및 조례 개정으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야간진료 시 재정적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태백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 특히, 소아청소년과 병원은 의원급 2개소 뿐이며 이 또한 주간 진료는 가능하나,
  야간이나 공휴일에 **소아환자의 진료공백이 심각한 수준임**

[태백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 현황]

(2025년 10월 말 기준)

| 구분 | 명 칭 | 운영시간 | 전문의 수 | 병실운영 |
|---|---|---|---|---|
| 의원 | 류상우소아청소년과의원 | 평 일: 08:30~18:00 | 1 | X |
| | 튼튼소아청소년과의원 | 평 일: 09:00~18:00<br>토요일: 09:00~13:00 | 1 | X |

-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상황 발생 시 인근지역인 정선·강릉·원주 등
  외부로 이동해야 하며, 이로 인해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고 치료 지연 우려 발생
- 초기 진료의 지연은 영유아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의료 불안감을 가중시켜 인근 도시로의 이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의료기관 운영 어려움 발생**
  - 태백시 내 소아청소년과는 의사 1인체제로 운영되어
    진료시간 연장 및 일요일, 명절 등 공휴일 추가 운영이 어려움.
  - 추가 인력을 고용 시 인건비 증가로 인해 의료기관 자체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야간진료 운영이 어려움

## 규제개선 과정

| | |
|---|---|
| 2025. 2. 26 | 공공어린이병원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2025. 8. 1. | 「태백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br>- 공공야간어린이병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 2024. 4. 3.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업무 협약(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 2024. 4. 30. | 조례안 시의회 상정 및 의결 |
| 2024. 10. 4. | 2025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 2025. 4. 1.~ | 태백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시작 |

## 개선내용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부담없이 야간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함
-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한 **진료 공백 해소**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태백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 운영병원: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운영기간: 2025. 4. 1. ~ (매주 월~금요일), 18:00~23:00
    야간 5시간 운영,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인
  - 운영위치: 태백병원 원무과 맞은편
- **소아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소아·청소년에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 급성 호흡기 질환, 열성 경련, 사고 후 응급처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치료

-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 개선**
  - 지역 내 소아 의료공백 해소로 육아 세대의 정착 유도
  - 도심과 농촌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로 안전망 강화
-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 활성화 기여**
  - 의료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인근 도시로의 이탈 감소
  -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으로 인구유지 효과 기대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포스터




태백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식

지역 > 태백

# 태백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본격 운영

김우열 입력 2025.04.03 | 지면 13면 | 댓글 0

가

**월~금 오후 6시~11시까지**

태백지역 소아청소년들을 위한 야간진료가 실시돼 타 지역 이동 불편 해소 및 의료 질 향상이 기대된다.

지역 소아청소년의 야간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은 지난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4월 태백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공 야간 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 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주말 및 공휴일 휴진),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이다.

시는 추후 주간 및 주말진료, 입원치료가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 유일의 종합병원인 태백병원은 지난 2021년 7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중단했다. 이로인해 소아청소년들의 야간진료 및 입원가능 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 병원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김우열

07

# 전통시장 노점 등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환경위생과 ☎ 033-370-2391

## 개선 전

전통시장 내 노점상, 이동판매대영업자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불가
(시설기준 등 영업신고 조건 미충족)

## 개선 후

공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득한 경우 노점상, 이동판매대, 불법건축물 이용 상인도 (조건부) 영업신고 가능하도록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완화

방문없이 영업신고 기간연장 및 폐업처리 가능하도록 민원절차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오랜 기간 전통시장에서 노점상 등의 무신고 식품위생 영업 만연
- 시장 내 영업신고 한 업소도 무신고 업소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법령 준수 의무 무시·경시하는 태도 만연
- 위생관리 미흡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잦은 민원 & 분쟁 유발)
- 민원 발생 시 행정적 대응 한계(고발대상) 및 상인들의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독립된 건물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미충족 시 영업신고 불가

  ⇒ 전통시장 내 업소 대상 시설기준 특례 규칙 적용 시 유연성 미흡

실태조사 ⇨ 관계부서 협의 ⇨ 간담회 및 지역사회연계 ⇨ 자치법규 전부개정 ⇨ 영업신고 추진

## 규제개선 과정

- 실태조사('25. 2.)
  - 조사대상: 전통시장 인정구역내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전체
  - 조사내용: 운영 업종, 규모, 임대·자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득 여부 등
  - 조사결과: 전체 식품위생업소 84개 중 40개(48%)가 무신고 영업

  ⇒ 노점상 32개, 불법건축물 사용업소 4개, 기타 4개
- 관계부서 협의('25. 2.~)
  - 전통시장 관리부서인 경제과와 자치법규 개정(안) 협의
  -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 노점상, 불법건축물 사용업소의 양성화 방안 협의
- 시장상인회 간담회 및 지역사회 연계('25. 4.)
  - 자치법규 개정 내용 및 상인회의 역할 등 안내 & 협조 요청

-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절차 추진 지원요청(한국외식업중앙회 영월군지부)
- 시장방문 영업신고 지원 서비스 제공(방문접수, 신고증 수령 대행 등)

• **자치법규 전부개정 추진('25. 3.~5.)**

「영월군 식품관련 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의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항에 대해 적용특례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식품위생업 영업신고 추진('25. 5. ~)**

-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위한 안전검사 및 시설 정비 진행(상인회 주관, 경제과 지원)
- 영업신고 전 업종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이수
- **전체 무신고업소 40개 중 34개 업소 영업신고 완료, 5개소 절차 진행 중, 휴업 1개소**

## 개선내용

• 자치법규 전부개정(영월군 식품관련 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시설 기준 개정 주요 내용 | ·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조건 있음<br>· 작업장 또는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업종별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칸막이, 커튼 등으로 구획되어야함<br><br>※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점, 전통시장의 특성상 타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명확히 분리하거나,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획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특례 적용을 통한 영업신고가 어려웠음 | · 작업장 또는 영업장은 전통시장 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구역, 축제(행사)장 등 지정된 장소에 위치해야 함.<br>· **이동판매대이거나, 독립된 구조물**로 신고한 업종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 구획 · 구분되어야 함.<br><br>※ 건축물의 위치에 대한 조건을 삭제하고 작업장 또는 영업장의 위치에 대한 조건과 이동판매대 또는 독립된 구조물을 갖추고 타업종과 구분만 되어도 영업신고 가능 하도록 개정 |
| 조건 | - | ·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거나, 상인회·기관 등과의 행사 참여 협약(계약)을 체결한 업자는 영업신고 가능<br>· 영업기간을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행사기간"으로 제한<br>· 영업기간이 만료되면 영업자의 별도 신고 없이 직권 폐업처리 가능 |

• **전통시장 인정구역 내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면 노점상, 이동판매대, 불법건축물 사용자도 조건부 영업신고 가능**

- 영업기간을 공유재산사용 허가기간·행사기간·협약기간으로 한정해 시장 내에 노점상 난립 방지
-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및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구축
  - 영업기간 **만료 시** 영업자가 별도 신고 없이 직권 폐업처리 가능
  - 영업기간 **연장 시** 전통시장 관리부서와 공유재산 허가 사항 공유를 통해 영업자가 **군청 방문 없이도 영업기간 연장처리 가능**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무신고 식품위생업소 양성화(40개소 중 34개소 영업신고 완료)
- 식품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 법적 영업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영세상인 생계 안정 및 상인 간 형평성 확보로 **민원·분쟁 감소**
- 행정절차 간소화로 상인들의 불편 해소



전통시장 노점



시장상인 간담회

# 08

# 정책사업 연계로 법적제도의 한계를 해소한 유해축사 정비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33-440-2033

## 개선 전

50여년간 운영된 대형축사로서, 악취와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이 지속 발생

해당 축사는 합법적 인허가 시설이고, 농장주의 재산권 보호 문제로
철거·이전 등 강제 행정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후

강제철거가 불가능했던 법적 한계를 국비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적극행정으로 제도적 해소하였으며,
단순 민원해결을 넘어 정책 통합형 모델로 발전

## 현황 및 문제점

-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일원에는 약 50년간 운영된 대형 축사(양지농장)가 위치하고 있음
- 해당 축사는 지형상 마을과 인접(원천1·2리, 계성리, 서오지리)하여 악취 확산 및 가축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지속 발생하며,
- 해당 축사는 악취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산폐수 불법방류 등 환경오염이 심각했음에도 합법적 인허가를 통해 등록된 시설이기에,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이전이나 철거 등 강제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규제개선 과정

- 2024년 실무협의회 및 주민위원회 운영을 통해 민원 반복발생 지역에 대한 공익적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
- 주민위원회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농장주의 철거 동의서 및 토지 매각 동의 확보
- 기존 행정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가 포함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전략적으로 대응
- 2025년 공모 선정에 따라 사업의 법적·재정적 근거를 확보하고, 농장 부지를 매입 후 철거 방식으로 정비 추진

## 개선내용

- 축산법, 악취방지법 등 기존 법령상 한계로 강제 철거·이전이 불가했던 기존 구조를 국비공모 연계, 공익사업 지정, 공공예산 확보 등 적극행정적 접근을 통해 제도적 해소

*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사업 (농림축산식품부)
- 주민 민원과 군간부 유입계획(930명 규모) 등을 고려해 화천군은 유해시설인 양지농장 철거를 전제로 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2025년 예비계획에 반영.
- 축사 철거를 전제로 한 재생사업계획 수립(커뮤니티센터, 공유텃밭, 마을공원 등) 및 군(軍)과 연계한 공동체 사업(쿠킹클래스 등) 구상.

- 주민 생활불편 해소라는 공익성을 바탕으로, 민간시설에 대한 지자체 개입의 타당성을 확보
- 단일 민원 처리에서 벗어나, 마을 커뮤니티공간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연계하여 단순 규제 해소를 넘어 정책 통합형 모델 구축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수십 년간 반복되었던 악취 민원이 행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며
- 지역 주민들의 획기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 텃밭, 공원 등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
- 공모사업과 적극행정을 결합한 사례로, 사유재산권과 공공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민원 해결 모델로 전국 접경지역 및 유해시설 밀집지역 정비시 정책모델 확산 가능



유해축사 현황



재생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09

#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연계 청년농촌 공공임대 주택 조성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 033-440-2952

## 개선 전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관련 시설물 외 토지이용 금지,
영농여건불리농지 경우 효율적 이용 불가능

## 개선 후

농촌활력촉진지구를 통해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동시에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가능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주거단지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건축물, 신축, 용도변경 등 토지 이용이 엄격히 금지됨. 따라서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어렵거나 농업환경이 변화한 땅에는 농업적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가 더딤
- 농업진흥구역의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하여, **농촌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 현실에 맞춰 농촌 정주 여건 개선, 청년 유입 등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으나, 농업진흥구역의 경직된 규제로 인해 혁신적 사업 추진이 어려움
- 농업진흥구역 제도가 실직적 농지 보전보다는 행정적 구획에 의존하여, 오히려 농지보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농지의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음

## 규제개선 과정

-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 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필지를 선정(하남면 원천리 1019 일원)
- 「강원특별법」 제49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사업 신청: ’24. 12. 13.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종합계획 심의회: ’25. 3. 31.
-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선정 및 지정고시: ’25. 4. 11.
- 지정 면적 30,934㎡ 해제와 동시 해당 필지에 청년들의 귀농·귀촌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신청: ’25. 4. 11.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서면 및 현장평가: ’25. 4. 22.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확정: ’25. 5. 1.

## 개선내용

-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로 불려 국내 식량 자급률 제고 및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촌 환경보호, 무분별한 개발 억제 및 농지의 효율적 이용 목적으로 지정
-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이유로 **비효율적 농지가 급증**함과 동시에 **농업 외 용도 활용이 봉쇄되고 농촌의 다양한 수익창출 제약**되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
-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발굴하여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통한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청년들의 귀농·귀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추진
- 화천군은 1970년대 초까지 인구 약 5만명 이상이 거주하였으나, 80년대 후반 인구 3만명 붕괴, 2017년 이후 인구 2만 5천명을 하회하고 있으며, 현재는 약 2만 3천명이 거주,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개편의 영향으로 2022년 화천군에 위치한 27사단이 해체되어 화천군의 인구감소 및 쇠퇴 가속화 및 접경지역 군사도시 개발규제 등으로 인한 확장성 및 개발의 한계로 인한 도시 성장 정체
-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29세대)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공동보육시설 및 커뮤니티센터(400㎡)를 설치해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청년층의 보육·문화·여가 수요를 충족**시켜 농촌 삶의 질을 개선

## 기대효과

- 실질적 농업 지속이 불가한 농지를 개발하여 화천군에 맞는 **새로운 농업농촌 활력 문화 조성**

- 귀농귀촌 청년플랫폼을 구성하고, 청년복지를 구현함으로써 귀농·귀촌 청년들의 안정적 정주 여건 제고
- 귀농·귀촌 청년농촌보금자리 공공임대주택 조성으로 농촌인구 재생산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소멸위기에 대응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 추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조감도

GANGWON STATE

# II.

# 기업규제 해소 우수사례


| | | |
|---|---|---|
| 도 본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제도 개선 | 48 |
| 도 본청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 52 |

# 01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제도 개선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 033-249-4765

## 개선 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상대자 선정 과정에서 사전판정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착오나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적격인 업체를 제외할 수 있으나,
조달시스템에 오류 방지체계나 통보 및 이의신청 체계가 없음

## 개선 후

**사전판정 과정에서 이의신청 제도 개선**

사전판정 결과 특정 계약상대자가 제외되었을 때,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회 부여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으로 피해 예방과 조달시스템 신뢰 회복 기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결과에 따라 수요물자를 납품할 자를 결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제도 운영
  -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MAS 제안공고를 통해 계약상대자를 선정(제안서를 제출받아 가격, 품질, 신인도 등 종합평가)하며, 제안서 평가 전에 사전판정(규격 및 납품지역 조건*, 평가기간 중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으로 부적격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능

- 문제점
  - 기존에는 수요기관이 제안서를 평가하기 이전에 규격 및 납품 조건 등을 사전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를 제외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 착오 등으로 적격인 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 처리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조달시스템에서 오류을 방지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전판정 제외 결과를 인지할 수 없었음

## 규제개선 과정

- 중앙규제 개선과제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 건의(2023.10.)
  - '23. 8. 25.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참여기업으로부터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사전판정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요청접수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판정에서 제외된 사유 및 결과를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일정기간 이의신청 기회, 기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23년 10월 행정안전부 및 '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제도개선 건의하여 '24년 1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조달청의 수용 의견을 회신받음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3 제3항, [별첨2]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0조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5조 제4항

- 후속 조치로 조달청이 조달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사전판정 부적격업체에 대한 통보절차 및 이의신청 기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5년 6월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1년 11개월만에 제도 개선 완료

## 개선내용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첨 1.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 공동수급체 운용요령 제10조의 2(사전판정 결과 통지 등)에 따라 제안서 제출업체 사전판정 결과 부적격업체에 대한 적격여부와 이의신청 접수기한을 통보하는 규정과 이의신청 기한(3일)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 (조달청 훈령 제2273호, 2025.06.10.)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다수공급자계약 계약상대자 사전판정 과정의 이의신청 제도개선
  - 수요기관이 사전판정을 통해 특정 계약상대자를 제외할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업체에 즉시 통보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실수나 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제공함 이를 통해 고의나 과실, 또는 행정적 오류로 인해 적격 업체가 평가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되는 문제를 예방 가능
- 기대효과: 공정한 평가 체계 구축으로 조달시스템의 신뢰 회복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사전판정 과정에서 업체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부여된다면, 착오로 인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상대자 사전판정 결과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의 불합리한 피해를 막고, 조달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 (2023. 8. 25.)

## 강원도, 조달청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규제 개선

2025-07-17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




강원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를 통해 조달청의 계약 관련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 발굴한 조달청의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관련 규제가 1년 11개월 만에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전국의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2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 033-249-4765

## 개선 전

**지식산업센터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의 허용 대상이 아님**

지식산업센터의 건축물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고 통신판매업은 허용되는 업종이면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허용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 제한됨

## 개선 후

**지식산업센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가능**

「'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25. 12월) 예정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하는 규정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통신판매하려면, 해당 사업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록이 가능 업종에 해당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관할 보건소 등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이때 「건축법」에 따라 사업장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공장용, 비상주 사무실 포함)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의 허용 대상이 아님

## 규제개선 과정

- 기업에서 전화(25년 6월)를 통해 신청한 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교정하였으며 관련 지자체(원주시 보건소) 및 도 유관 부서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협의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
-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기업 규제개선 과제로 건의하였으며, '25년 10월 28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개최한 합동 간담회를 통해 강원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해당 규제 안건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

## 개선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산업집적법」 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할 예정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식품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제도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시 '독립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건축물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영업신고 시 관할 지자체에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출물 등록대장 등을 확인하여 신고 수리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장소가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임을 확인
  -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6년 식품안전관리지침」을 개정('25년 12월) 할 예정

-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장벽 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시 건축물 용도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어들고, 지식산업센터 내 미활용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편의성과 제도의 합리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도-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2025. 10. 28.)

HOME > 정치 > 자치분권

# 강원도·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협력 강화 이어간다

심예섭 | 승인 2025.10.28

## '선순환 협력체계' 구축 평가




▲ 강원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도-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건희 도 규제혁신과장,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병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권혁종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박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 전수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 제공

강원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를 이어가고 있다.

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전달하고, 옴부즈만이 이를 해결하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진흥원에서 '강원도-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병진 강원
혁종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희 원주미래산업
회 강원지역 본부장, 전수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등 40여



▲ 강원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서 '강원도-중소기업 옴부즈만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건희 도 규제혁신과장, 이주연 도 기업호민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병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과장, 권혁종 메인비즈협회 강원연합회 수석부회장, 조영희 원주미래산업진흥원장, 박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장, 전수원 외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강원도 제공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체결된 규제혁신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양 기관 간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활동 범위 확대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처 사용처 확대 등 7건의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서건희 도 규제혁신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히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
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

한편, 강원도는 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중앙부처 관련 규제 개선 과제를 옴부즈만에 건의했으며, 옴부즈만이 상반기에 발표한 '중소기업 체감형 지방규제 개선' 결과에서 전국 평균(27.4%)을 크게 웃도는 전국 최고의 개선율(42%)을 달성했다. 심예섭 기자

심예섭

GANGWON STATE

# III.

# 적극행정 우수사례


| | | |
|---|---|---|
| 도 본청 |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완화 제도개선 | 58 |
| 도 본청 | 농지특례 현실화! 농촌활력지구 '1만평 규제' 없앴다 | 62 |
| 원주시 |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 65 |
| 강릉시 | 화장장 사용료 관내·관외 기준 개선 | 67 |
| 동해시 | 자치법규 개정으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 69 |
| 양양군 |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추진 | 72 |

# 01

#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처 제한 완화 제도개선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033-249-3074

## 개선 전

지병역 의무중인 군장병은 소비쿠폰 사용처를 주소지 소재 지자체
(주소지 및 PX에서만 사용 가능)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

## 개선 후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

## 현황 및 문제점

- 군 장병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해 사용해야 했으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만 예외적으로 전국 군마트(PX)에서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했음
-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해 군 장병이 짧은 외출·외박 때는 소비쿠폰 사용이 어려웠음

## 규제개선 과정

| | |
|---|---|
| 2025. 7. 29. | 의무복무 군장병 소비쿠폰 사용지역 제한 완화 건의(도 → 행정안전부) |
| 2025. 8. 1. | 도지사가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제를 공식 건의했고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지시<br>- '군장병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군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통령은 깊이 공감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지시 |
| 2025. 8. 2. |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방문 추가 건의(도 → 행정안전부) |
| 2025. 8. 5.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군 장병의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 |
| 2025. 8. 21. |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 확정: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 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됨 |

## 개선내용

- 2차 소비쿠폰(9. 22.)부터 군 장병의 소비쿠폰 사용 편의를 높이고 군부대 인근 상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군 장병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소비쿠폰 신청(관외신청) 때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

<군인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 지급 및 사용 방안>

| | |
|---|---|
| 현행 | (기준) 신용·체크·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사용 가능 |
| | (예외) 나라사랑카드: 주민등록상 주소지 + 전국 군마트(PX) |
| 개선 | (추가) 관외신청-선불카드 등: 복무지 인근 상권<br>※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PX는 사용 불가 |

-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개선에 맞춰 군 장병 대상 지원 강화 예정
  - 군장병 관외신청에 대해 도비 등 지방비를 추가 투입하고 군부대와 협력해 '찾아가는 신청 접수반'을 운영하는 등 장병들의 신청 편의성을 높임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부터 의무복무 중인 군장병이 부대 인근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됨
  → 접경지역 등 군부대 밀집 지역에서는 소비 활성화 효과 발생




신청과 소비는 지금 있는 곳에서!
- 군장병 소비쿠폰, 복무지역 신청으로 지역을 살리다 -
2차 부터는 복무지에서 신청 가능해!
주소지
복무지
✔ 군복무 중에도 지역을 위한 한 걸음
✔ 주민등록 주소지 아니어도 신청 OK!
✔ 복무지 신청으로 바로 사용 가능!
✔ 장병의 소비가 지역 소상공인의 희망입니다.
신청기간: 2025. 9. 22. ~ 10. 31.
지급금액: 1인당 10만 원 / 선불카드 등 지급
사용기한: 11.30일까지 / 복무지역 시군 상권 사용 가능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부대 방문 '찾아가는 신청 접수반"

02

# 농지특례 현실화!
# 농촌활력지구
# '1만평 규제' 없앴다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 033-249-2138

## 개선 전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 면적 10,000평(30,000㎡) 조항으로 인하여 민간 개발 수요 창출 한계, 소규모 공공개발 사업 참여 등의 어려움이 발생

## 개선 후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0,000㎡(10,000평) 조항을 삭제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 및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공포·시행(8. 1.)

## 현황 및 문제점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舊 절대농지)을 해제할 수 있으며,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임

※ 2024년부터 6개 시군 9개 지구, 약 116㏊(350,000평)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추진 현황**
- '24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24.11. 22.): 4개 지구(강릉, 철원, 양구, 인제), 총 143㏊(농업진흥지역 61㏊)
- '25년 1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고시('25. 4. 11.): 5개 지구(횡성, 철원, 화천, 인제2), 총 70㏊(농업진흥지역 55㏊)
- '25년 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신청(4. 14.~8. 29., 개정 조례적용 2개지구 신청):
  6개 지구(강릉, 삼척, 홍천2, 영월, 정선), 총 58㏊(농업진흥지역 46㏊)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10,000평(30,000㎡) 조항으로 인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민간 개발 수요 반영, 주거환경 개선 등의 소규모 공공개발 사업 참여 어려움 등 농지특례 활용에 한계가 있었음

※ 강원특별법 시행 10개월 지난 시점 '전체 해제 가능 총량(4,000㏊) 대비 실제 해제 면적은 2.9%에 그쳐' 보도
(강원일보, '25. 4. 14.)

## 규제개선 과정

- 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 시군설명회 질의응답 중 최소 지정 면적 기준 축소 건의 접수('25. 4. 29., 화천군) → 농지특례 실효성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법 시행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소 지정면적 삭제 방침 발표('25. 6. 9.)

## 개선내용

- 농촌활력촉진지구 최소 지정면적 30,000㎡(10,000평) 조항을 삭제한 개정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통과('25. 7. 17.)

-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관리 규정」 공포·시행('25. 8. 1.)
  - 지구신청 추가 접수: 기존의 1차 접수('25. 4. 14. ~ 6. 30.)기간 동안 면적 요건 미충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시군에 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5년 2차 촉진지구 신청 추가 신청 접수('25. 8. 1. ~ 8. 29.) 시행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개정 조례·훈령 공포('25. 8. 1.)후 '25년 2차 촉진지구 신청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30,000㎡기준 미만 신청 2건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음
  - 강릉시 농산물 비축기지(28,687㎡), 홍천군 농촌생활환경정비(15,003㎡)

    ※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및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정·고시될 예정

- 10,000평 이하 지구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군별 지구 지정 신청 증가로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 및 시군 주요 현안사업 등에 특례제도 적극 활용 예상
  - 규제 완화를 통한 농지 특례 활용 접근성 향상으로 민간과 소규모 개발 사업자 참여가 확대되고, 개발면적 확보 유연성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구신청 증가 예상



# 03

# 공장용지 내 조경 의무 면적 규제 완화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축과 ☎ 033-737-3411

## 개선 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장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선 후

전체면적 2,0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 면제,
2,000㎡ 이상인 공장의 조경 기준은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

## 현황 및 문제점

- 중소 공장 증축 및 신규 투자 시 조경의무 기준이 과도함

## 규제개선 과정

| | |
|---|---|
| 2025. 2. |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계획 수립 |
| 2025. 3. | 건축위원회 심의 |
| 2025. 4. | 시의회 상정 |
| 2025. 5. | 조례 공포 및 시행 |

## 개선내용

- 「원주시 건축 조례」 제29조 제4항 신설: 전체면적 2,000㎡ 미만인 공장은 조경 조치 의무 면제, 2,000㎡ 이상인 공장의 조경 기준은 기존 대지면적의 10%에서 5%로 완화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관내 기업들이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등 부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 부담이 크게 완화



# 04

# 강릉시 화장장 사용료 관내·관외 기준 개선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로장애인과 ☎ 033-660-3858

## 개선 전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모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사용료 적용

## 개선 후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죽은 태아의 경우 사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내 사용료 적용

## 현황 및 문제점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는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죽은 태아의 경우 모(母)의 주민등록상 기준지를 기준으로 관내 사용료 적용하고 있음

  ※ 죽은 태아: 50,000원(관내), 200,000원(관외)

- 출산 후 사망, 이혼, 별거, 직장 등의 사유로 모(母)가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내 사용료 적용 불가

## 규제개선 과정

| | |
|---|---|
| ’24. 6. | 2024년 강릉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과제 채택 |
| ’25. 7. ~ 8. | 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 |
| ’25. 8.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계획 수립 |
| ’25. 10. |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

## 개선내용

-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2항 [별표2] 개정

  ※ 개정 조례 「강릉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별표2]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관내 사용료 기준을 부 또는 모로 확대 적용하며 성적 차별 요소 제거
- 양육 의무자에 동등한 혜택을 제공하여 성평등 가치가 반영된 공공정책 실현

05

# 자치법규 개정으로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도시정비과 ☎ 033-530-2631

## 개선 전

**공적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인원 미달에 따른 공실이 지속적으로 발생**

지역 내 청년층 주거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청년 정주 기반 약화

## 개선 후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범위 확대 (청년창업기업 대표 → 청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소득구간별 차등화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공적임대주택이 자치법규 상 입주자격 범위 제한으로 1차례 자격 완화를 하였으나, 여전히 모집 시 인원 미달에 따른 공실이 발생
- 지역 내 청년층 주거 수요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청년 정주 기반 약화

## 규제개선 과정

| | |
|---|---|
| '25. 8. 4. |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개정 계획 수립 |
| '25. 8.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등 실시 |
| '25. 8. 12. | 입법예고 |
| '25. 9. |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 '25. 11. | 공포 및 시행 |

## 개선내용

- 공적임대주택 입주자격 범위 확대
  - 동해시 공적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규칙 제5조(입주자격) 제5호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는 **청년창업기업의 대표**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 2**에 따른 '**청년**'으로 개정
  - → 입주자격을 기존 청년창업기업 대표에서 청년 전체로 확대하여 다양한 청년층 (대학생,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등) 수용
- 소득구간별 차등화를 통한 취약계층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하여 소득 구간별 차등화를 적용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입주자 주거비 부담 완화

→ 임대보증금·임대료를 소득구간별 차등화해 주거 취약 청년층의 부담 완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국토교통부 고시 적용 시)>

(단위: 원)

| 소득구간 | | 소득구간 계수 | 변경 전 | | 변경 후 | |
|---|---|---|---|---|---|---|
| |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 30% 이하 | 0.35 | 10,000,000 | 208,000 | 3,500,000 | 72,000 |
| | 30% 초과 50% 이하 | 0.40 | 10,000,000 | 208,000 | 4,000,000 | 83,000 |
| | 50% 초과 70% 이하 | 0.50 | 10,000,000 | 208,000 | 5,000,000 | 104,000 |
| | 70% 초과 100% 이하 | 0.65 | 10,000,000 | 208,000 | 6,500,000 | 135,000 |
| | 100% 초과 130% 이하 | 0.80 | 10,000,000 | 208,000 | 8,000,000 | 166,000 |
| | 130% 초과 150% 이하 | 0.90 | 10,000,000 | 208,000 | 9,000,000 | 187,000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주거 접근성 확대 및 주거 불평등 완화
  - 입주자격을 청년 전체로 완화함으로써 취업 준비생, 대학생, 비정규직 등 다양한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이 대폭 향상됨
  -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여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인구소멸위험지역인 동해시의 인구유입·정착촉진 지원책으로 지역활력 제고

06

# 가설건축물 인허가 개선 추진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허가민원과 ☎ 033-670-2838

## 개선 전

3년마다 연장신고 해야하는 민원불편 사항 발생 및
가설건축물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 증가

## 개선 후

저온저장고 일제조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농촌체류형쉼터 처리기간 최대15일 → 3일이내 간소화

## 현황 및 문제점

- 3년마다 연장신고 해야하는 민원불편 사항 발생 및
  가설건축물 증가에 따른 관리 부담 증가

## 규제개선 과정

- 「양양군 건축 조례」 개정 및 저온저장고 일제조사 실시

## 개선내용

- 「양양군 건축 조례」 개정 및 저온저장고 일제조사 실시: 337개소
  - 「양양군 건축 조례」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관련 규정 개정: '24년 12월
  - 저온저장고 337개소 현지조사: 1월 ~ 5월
  - 농촌체류형쉼터 관련부서 회의개최 및 문제점 도출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주요성과
  - 저온저장고 일제조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 1차분(253개소) 재산세, 연장신고 제외 통보: 1월 ~ 3월
    · 2차분(84개소) 현지실사 후 제외: 4월 ~ 5월
  - 농촌체류형쉼터 처리기간 최대15일 → 3일이내 간소화
- 기대효과
  - 민원해소 및 신고수수료, 면허세, 재산세, 취득세등 혜택 및 가설,
    건축신고 처리로 설계비 지출 등 경제적 부담 해소

GANGWON STATE

# Ⅳ.
# 자치법규 정비 사례


| | | |
|---|---|---|
| 도 본청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76 |
| 도 본청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79 |

01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 관련규정 정비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 ☎ 033-249-2842

### 개선 전

상위법령 개정사항(신설)
조항 신설에 따른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조문의 조례개정 필요

### 개선 후

위임조문 개정을 통한 상위법령 실효성 확보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

## 현황 및 문제점

-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24. 1. 19.)에 따라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정비구역의 요건 등(제55조제3항~제5항) 신설
  - 위 조항 신설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요건/비율' 등 상위법령이 위임하는 조문의 조례개정 필요

## 규제개선 과정

- 강원특별자치도 민생규제 개선 및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계획 수립 (2025. 5. 9., 규제혁신과)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 계획 수립 (2025. 5. 9., 규제혁신과)
-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결 (2025. 7. 17.)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 (조례 제5650호, 2025. 8. 1.)

## 개선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 8. 1. 시행)

| 연번 | 상위법령 | 자치법규 | 개정내용 | 개정일 |
|---|---|---|---|---|
| 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1~2항 |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설정,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 설정 | '25. 8. 1. (조례 제5650호) |
| 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4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3~4항 |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정비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가 용적률의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 설정 | |

| | | | | |
|---|---|---|---|---|
| 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5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항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2조의2 (용적률에 관한 특례) 제5항 | 용적률 완화 정비구역에서 공급받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공주택 분양 공급 기준 설정 | '25. 8. 1. (조례 제5650호) |
| 4 | -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1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제1항 | 역세권 등 설정에 따른 용적률 특례 적용 대상지역 확대 (원주시→18개 시군) |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 8. 1. 시행)
  - 정비구역이 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이거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을 완화(100%→120%)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건설·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 및 조례의 제정 목적 달성에 기여

- 시군 단위 지역 특성 고려 및 사업성 저하 우려로 규제 개선
  -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현재 원주시에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도내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특례 적용 대상지역을 18개 시군으로 확대 및 완화



02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 및 세분화

추진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과 ☎ 033-249-2164

### 개선 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때 사용료 반환

### 개선 후

5일 전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전액 환급, 3일 전까지 50%까지 공제 후 환급, 1일 전까지 80% 공제 후 환급
(사용료 반환규정 완화 및 세분화)

## 현황 및 문제점

- 사용료 불반환 등 사용일 기준 및 신청시간 기준 환급율이 세분화되지 않음
- 오래된(2026. 6. 17. 개정) 시설 사용료 규정을 물가상승률 및 동종 학습기관의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필요

## 규제개선 과정

- 대통령 지시사항(2014. 1. “준조세 원점 재검토”) 및 기획재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2024. 3. 27.)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의 준조세** 정비 및 규제격차 해소 추진계획」 수립(2024. 4.)
-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규제 일제정비 추진계획」 수립(2025. 7. 10.)
- 「2025년도 제3회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상정(2025. 9. 8. ~ 12., 서면)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 입법예고(2025. 8. 29.)

## 개선내용

-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2025. 8. 1. 시행)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인이 취소원을 제출한 때 | 2. ------ 5일 전 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전액 환급하고,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50% 공제 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80% 공제 후 환급한다. |

## 주요성과 및 기대효과

- 사용료 반환 규정 완화 및 세분화에 따라 이용자 권익보호 및 국민 실생활 부담경감

---

* 부담금: 공공주체가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

** 준조세(사용료 등):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중점과제

***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학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2조(변상책임) 개선권고

# 2025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집

**발행일** 2025. 12.

**발행처**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과
**주소** (2542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 TEL 033.249.3054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발간등록번호** 72-6530000-100068-10
**ISBN** 979-11-87772-51-4 03060

**제작** 로딘어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ISBN 979-11-87772-51-4 03060